

제 6 장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외교 활동

제 1 절 안보리 진출과 유엔 외교

1. 유엔의 역할 및 권능의 강화

유엔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후 인류를 대량참화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 세계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1945년에 창설되었다. 1945년 창설 당시 유엔 회원국은 51개국에 불과했으나 우리 나라가 1991년 16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이래 지금은 185개국으로 늘어났으며,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등과 같은 소국으로부터 인구 12억의 중국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가입한 명실상부한 보편적 기구로 발전하였다.

냉전체제하에서 동서 양진영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유엔 창설자들이 당초에 상정하였던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의 증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유엔은 냉전의 붕괴와 함께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제평화와 인류복지의 수호자로서의 정통성과 효율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특히 냉전종식 후 민족, 종족 분규 등으로 인한 지역평화의 교란현상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고, 신국제질서를 주도해 나갈 강대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자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유엔의 평화유지 역할이 부상하고 있으며, 군축, 환경, 인권, 빈곤문제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개입 확대가 요청됨으로써 유엔의 역할은 강화되고 있다.

유엔의 역할 강화 추세중에서 우선 첫번째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유엔 역할의 질적변화를 꼽을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현장상의 권한과 책임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냉전종식이후 미·러의 공동보조, 거부권 행사자제 등에 의한 것이며, 이에 따라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안보리의 결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후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유엔 현장상의 강제조치(제7장)가 이락, 유고, 리비아, 아이티 사태 등에서 수시로 발동되고 있는 추세이다.

유엔의 역할 강화 추세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의 질적·양적 성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의 PKO는 전통적인 휴전감시 기능외에도 선거감시, 난민송환, 과도행정 관리 등 비군사적인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1948-1987간 총 13개의 PKO가 설치되었던 것이 1988-1994간에는 총 18개의 PKO가 새로이 설치되었으며, 1995년 12월 현재 16개 PKO에 76개국 30,000여명이 참여하여 양적인 면에서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의 국제 평화유지활동 강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분쟁지역에 사무총장 특사를 수시로 파견하고 사무총장 자신이 중재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Pax-UN의 분위기는 1992년 1월 사상 최초로 소집된 안보리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되었고, 이 정상회담의 결의에 따라 1992년 6월 제출된 사무총장 보고서 'An Agenda for Peace(평화를 위한 과제)'는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 평화조성(peace-making), 평화유지(peace-keeping) 및 평화구축(peace-building) 등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 강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엔의 역할 강화는 비단 분쟁해결 분야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다. 유엔

은 1990년대에 들어서 침된 평화는 개발(development) 없이는 이룩될 수 없다는 명제아래 개발문제를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냉전시대에는 안보논리가 국제사회를 지배하였으나 이제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경제·사회개발 문제가 인류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것이다.

지구상에는 현재 57억의 인구가 있으며, 이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4 억 이상의 인구가 절대 빈곤속에서 살고 있다. 또한 인구는 매년 약 9천 만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부족, 환경 황폐화, 자원 고갈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선진국과 후진국간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선진국에 속하는 인류의 약 20%가 세계 GNP와 무역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세계는 지금 ‘조용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인류가 핵폭탄의 위협과 함께 ‘저개발의 폭탄’이라는 위협을 안고 있으며,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국제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간의 안보유지와 함께 개발을 통해 빈곤, 실업, 소외 문제 등을 해결하여 개개인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는 ‘인간안보’ 개념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안보’는 전통적인 국경의 벽을 초월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사후처방이 아니고 사전예방을 뜻한다. 빈곤추방 문제가 1995년 3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사회개발 정상회의의 핵심주제로 채택되었으며, 다가오는 21세기 국제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유엔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평화와 안보를 추구하는 개개국가의 열망을 대변하고 국제협력과 인류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국가들의 노력을 조화시키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유엔은 이러한 국제환경 변화에 대처하고자 내부적인 개혁을 진행시키고 있다. 유엔의 개혁은 안보리 확대개편

을 통한 안보리의 민주성 및 대표성 제고와 함께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 의 기능 강화, 사무국 조직개편 등 점차 확대되고 있는 유엔의 역할에 걸맞는 조직의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오늘날 유엔의 과제

이같이 유엔의 역할과 위상은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으나 유엔이 한 차원 더 높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

유엔이 극복해야 할 첫째 과제로는 심각한 재정난을 들 수 있다. 유엔의 PKO, 경제·사회개발활동 등이 강화됨에 따라 소요예산도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995년도 PKO 예산으로 약 35억 달러가 소요되나 같은해 미납금은 17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유엔내에서 재정난 타개를 위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유엔에 대한 일부 회원국의 연체가 계속되고 또 유엔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범지구적 과제가 늘어가는 한 가까운 시일내에 재정문제가 크게 호전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엔의 민주화와 효율성 제고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안보리 개편문제를 일례로 들면 비동맹권은 유엔의 민주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즉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유엔 회원국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할당된 안보리 의석이 크게 부족하며, 또한 안보리가 일부 강대국간의 비공개, 비공식 협의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일반 회원국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상임이사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부권은 주권평등의 원칙에 반한 특전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므로 폐지 내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보리의 지나친 확대는 안보리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거부권 제도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주장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유엔의 과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일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유엔 산하기구와 유엔 전문기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폐합내지 축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유엔사무국의 경우 1992년 1월 Boutros-Ghali 유엔사무총장 취임이래 2차례 걸쳐 단행된 축소개편 작업으로 군살을 많이 제거하였으나 아직 다수의 유엔산하기구와 전문기구 중에는 업무중복 등 비효율적 요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유엔에서는 유엔기구 개혁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바, 유엔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여하히 효율 극대화를 이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유엔이 넘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3. 우리 나라의 유엔 안보리 진출

1995년 11월 8일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 나라는 185개 유엔 회원국 중 177개국이 참여한 투표에서 156표를 얻음으로써 칠레, 폴란드, 이집트 및 기네비소와 함께 1996-97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정부는 안보리 진출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 안정 및 외교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1996-97년 임기를 적기로 판단하여 1994년 2월 안보리 입후보를 공식 선언하고 안보리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는 우리보다 약 1년 앞서 입후보를 선언한 스리랑카와 아시아 그룹에 할당된 안보리 1석을 놓고 경합하였으나 적극적인 지지교섭 활동

으로 1995년 초에 다수국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1995년 5월 스리랑카의 입후보 사퇴와 함께 아시아 그룹의 단독후보로 추천을 받게 되었다. 이후에도 우리는 유엔 총회에서의 안보리 선거 당선에 필요 한 2/3이상의 지지표를 확보하기 위해 재외공관을 통한 통상적 지지교섭 외에 정상외교, 특사파견, 외무장관 회담 등 다각적 외교노력을 계속한 결과, 압도적인 지지로 안보리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된 것은 민주화 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배경으로 세계 중견민주국가로서 우리 나라가 국제무대에서 훌륭히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세계 각국으로부터 평가받은 것이라 하겠다. 1991년 우리 나라의 유엔 가입이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4년후의 안보리 이사국 피선은 우리 외교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유엔기관중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에 진출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과 함께 전세계 각 지역을 대표하는 10개 비상임이사국의 일원으로서 주요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평화를 위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성실히 책임과 의무를 완수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새로운 주목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안보리 진출에 따라 전세계 주요 국제문제에 대하여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도 증대될 것이다.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외교문제뿐 아니라 전세계적 차원에서 중요한 국제문제들을 직접 다루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제관계 시각이 넓어지고 각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는 등 세계화 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가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해결책 모색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국제무대에 우리의 외교력을 집중시킴으로써 외교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안보리에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대남공세에 상당한 억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의 안보리 진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해서 안되는 것은 안보리 진출에는 우리의 기여와 역할증대라는 책임도 수반된다는 점이다. 물론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된다고 해서 분담금이 높아진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가장 권위있는 기관의 일원으로 응분의 기여를 해야 하는 도덕적 책임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우리가 받은 도움을 되돌려 주고 우리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라들을 도와 준다는 자세로 우리의 경제력에 상응하여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증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

유엔평화유지활동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유엔이 전개하고 있는 주요 활동의 하나로서, 냉전이후 숫적으로나 활동범위에 있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평화유지활동은 원래 정전감시나 교전당사자를 분리시켜 분쟁의 악화를 방지시키는 것이 주요 임무였으나 최근에는 인도적 구호활동, 선거지원, 인권상황 감시, 국가건설 지원 등 그 임무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1995년 12월 현재 세계 각처에서 활동중인 유엔평화유지활동은 모두

16개로서 76여개국에서 3만여명이 참여중이며, 1995년도 유엔의 정규예산이 약 11억달러인데 비해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약 35억달러의 예산을 지출하였다. 정부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적극 기여하고, 유엔과의 협력강화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유리한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해외파병을 통한 국군의 현대화 및 국제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우리 나라는 1993년 7월부터 1994년 3월까지 소말리아 평화유지단(UNOSOMⅡ)에 250명 규모의 공병대를 파견한데 이어 1994년 9월에는 서부사하라 평화유지단(MINURSO)에 의료부대 42명을 파견하였으며, 1994년 10월에는 인도·파키스탄 평화유지단(UNMOGIP)에 군옵서버 5명 및 1994년 11월 그루지아 평화유지단(UNOMIG)에 군옵서버 6명을 파견하였다. 1995년중에는 앙골라 평화유지단(UNAVEMⅢ)에 우리 공병부대 198명을 파견하였으며, 1994년에 서부사하라에 파견된 우리의 의료부대의 파견을 1년간 연장하였다.

우리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는 높아진 국력에 상응하여 유엔 및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활동을 강화시키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과거 한국전쟁시 유엔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우리로서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5. 제50차 유엔 총회

가. 개 요

1995년 9월 19일 개막된 제50차 유엔 총회는 3개월간의 정기회기를 끝내고 12월 23일 휴회하였다. 유엔창설 50주년을 맞이하여 유엔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기대와 관심속에 개막된 이번 총회는 군축, 경제,

사회개발, 환경, 인권, 난민 등 주요 국제문제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 166개의 의제하에 총 282개의 결의와 22개의 결정을 채택하였다.

제50차 총회는 유엔창설 50주년을 맞이하여 유엔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분위기에서 예방외교 (preventive diplomacy), 경제·사회개발 문제, 군축문제에 관해 회원국들의 계속적인 관심이 나타났지만, 몇몇 주요사안에 있어서는 서방권과 비동맹권, 또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인식 및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대립양상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특히 제50차 총회 기간중에는 10월 22일부터 24일간 유엔 50주년 기념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국가원수 91명, 정부수반 37명을 포함한 각국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는 국제질서하에서 향후 유엔의 역할을 진지하게 모색하였다.



유엔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김영삼 대통령의 기조연설 (95. 10. 22, 뉴욕)

나. 군축 및 국제안보(제1위원회)

제50차 총회에서도 핵군축 분야는 중요한 쟁점분야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1995년도 핵확산금지조약(NPT) 연장회의 개최 및 프랑스의 핵실험 재개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여론 환기에 기인한 것이었다.

핵군축 문제 토의에 있어서 NPT 연장회의 결과를 둘러싸고 서방측과 일부 비동맹측의 대립이 두드러졌는데 서방측, 특히 핵보유국들은 NPT 연장회의 결과를 NPT의 무기한 연장을 달성하기 위한 서방측의 최대한의 양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반면, 비동맹권은 핵무기의 완전철폐를 위해서는 핵군축 노력의 시한적 구도(time-bound framework) 설정 및 방향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총회의 최대 관심사였던 ‘핵실험(금지)’ 결의안은 호주, 뉴질랜드 등 남태평양 국가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적극적인 외교공세로 지지세력이 대거 이탈함에 따라 예상밖의 저조한 지지로 채택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년도(1994년)에 이어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대인지뢰 수출 모라토리움 결의안 채택 등 대인지뢰 사용 및 이전 규제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을뿐 아니라, 일본에 의한 새로운 소형무기 결의안 제출에서 보여지듯이 전반적으로 재래식 군축분야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났다.

또한 가능한한 1997년에 제4차 군축 특별총회를 개최한다는 요지의 비동맹권이 제의한 결의안이 서방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었으나 개최 실현은 불투명한 상태다.

다. 경 제(제2위원회)

제50차 총회에서는 그동안 유엔에서 수년간 논의되어 온 경제·사회분

야 개편 및 개발을 위한 과제(Agenda for Development) 논의와 맞물려 경제·사회분야에서의 유엔의 역할증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제2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수는 42개로 예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그간 추진되어 온 경제·사회분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편노력(유사의제 통폐합 및 정리)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총회의 경제문제 토의방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안은 대부분 77그룹의 주도에 의해 작성되었고 개도국들이 유엔을 통한 주요 경제이슈의 의제 설정(agenda-setting)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이같은 동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환경관련 결의안이 11개나 채택되었으며, 최빈국, 내륙개도국 및 소규모 도서국 지원에 대한 관련 결의안이 각각 채택된 점이 주목되고 있다. 이들 의제들은 개발관련 의제와 함께 향후 유엔 총회의 주요사안으로 지속적으로 토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및 구주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유엔 경제사회 관련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구개혁 문제, 관련기구 통폐합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77그룹의 소극적 입장으로 인해 심도있는 토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라. 사회개발과 인권(제3위원회)

1980년대 말 냉전종식에 따른 평화와 안정의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기회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실업 등 사회문제와 함께 지역분쟁, 재해로 인한 대량난민 발생 등에 대한 범세계적인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문제는 1990년대 전반을 지나는 동안 그간의 정치·경제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경향에서 탈피하는 한편, 최근 수년간 유엔 총회 토의시에도 이에 대한 토의와 협력이 활성화되었다.

제50차 총회 중에는 유엔 창설 50주년에 따른 2000년대 인류의 공영을 위한 유엔의 새로운 활동분야 모색에 있어 인권, 사회분야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함께 유엔의 주요한 우선사업 분야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특히 강조되었으며, 이를 위한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각국의 실질적인 기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유엔 주관하에 1995년 3월 개최된 사회개발정상회의는 2000년을 앞두고 사회문제의 심각성과, 이의 해결을 위한 전세계적인 관심과 협력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범세계적인 빈곤퇴치, 고용증대 및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국제협력 방안이 협의되었다. 이에 따라 제50차 총회에서는 사회개발정상회의 결과이행 및 후속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와 함께 유엔을 중심으로 한 범세계적인 사회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1995년 9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는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인류의 참다운 발전을 위해 여성의 문제가 사회전반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여성인권의 불가분성 및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제50차 총회에서는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과 함께 국가별 및 국제적 정책 시행방안이 논의되었다.

제50차 총회중 인권분야 토의에 있어 특히 나이지리아 인권상황 규탄 결의안 상정 및 채택 과정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국가별 인권상황 개선과 관련된 선·후진국간의 대결적인 측면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인권의 개념에 관한 기본인식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반면, 개도국들의 소극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유엔 인권관련 기구강화를 위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중심적인 역할의 재확인, 유엔 인권센타의 기능조정 등의 실질적인 결실이 있었다.

르완다, 보스니아 사태 등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민족분쟁, 종교분쟁,

내전 등 국지적인 분쟁의 확산으로 총 2,700만명의 전례없는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게 되자 제49차 총회에 이어 제50차 총회에서도 난민구호 및 지원문제가 유엔의 중요한 우선사업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난민구호 및 지원을 위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역할 강화 필요성과 함께 난민구호사업이 인류 전체의 공통의 과제라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난민구호를 위한 각국의 자발적인 기금 지원의 확대가 요청되었다.

마. PKO 및 공보문제(제4위원회)

제50차 총회는 제49차 총회와 비교할 때 의제 전반에 걸쳐 비동맹, EU등 주요 그룹들의 입장에 큰 변화는 없었으나, 최근 중동문제의 진전에 힘입어 이스라엘 점령지내 인권침해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구(UNRWA) 의제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냉전종식후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탈식민 특별위원회의 역할 재검토 문제와 관련하여 서방 선진국과 비동맹간의 입장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PKO 제반문제, 공보문제 및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 문제는 관련된 별도의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다뤄왔기 때문에 제4위원회에서는 예년과 같이 전반적인 입장 개진 수준에 그쳤다. PKO 관련 결의 분량을 대폭 간소화시킨 것은 회원국들의 실리 추구경향을 잘 반영한 것으로 회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좋은 선례가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바. 유엔재정 및 인사문제(제5위원회)

1995년 9월 21일부터 12월 23일간 45회의 공식회의를 통해 총 34개의

의제가 논의된 제5위원회는 18개의 결의안과 22개의 결정을 채택하였다.

제50차 총회의 제5위원회에서는 1996-97년도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분담금산정 기준문제, 회의양식, 공동제도, PKO의 예산행정적 측면, 1994-95년도 예산문제, 산하기구 재정보고서 및 16개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예산배정문제 등의 의제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최근 수년간 PKO 예산의 급격한 팽창, 회원국의 분담금 연체 및 미납 상황 심화 등으로 인해 유엔의 재정난이 심각해 지자, 유엔총회는 1995년 1월 25일 총회 산하에 「유엔 재정상황에 관한 고위급 실무위」를 설치하여, 유엔 정규예산 및 평화유지활동(PKO) 예산에 대한 회원국들의 분담율 산정방식 변경문제, 회원국들의 분담금 기한내 완납 확보 방안, PKO 예산승인 절차 개선문제 등을 포함한 재정문제 전반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동 실무위에서는 유엔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중 주요한 내용이 유엔 정규예산 및 PKO 예산에 대한 분담율 산정방식 변경문제인 바, 현재 우리의 경제규모와 1인당 GNP 수준을 감안할 때, 분담율 산정방식이 어떻게 변경되든지 우리 분담율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력의 신장에 상응하는 국제적 기여 증대는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며 이는 우리 나라의 외교정책 수행에도 뒷받침이 된다고 하겠다.

사. 법률문제(제6위원회)

제6위원회는 11개의 의제를 심의하여 13개의 결의 및 1개의 결정을 채택하였는데, 적국조항 삭제 관련항이 포함되어 있는 현장 특위보고서에 관한 결의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결의 및 1개 결정은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 그밖에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간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를

개최하여 대륙붕 한계 설정위원회 선거일을 1997년 3월로 연기하였으며,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초기단계의 행정·예산문제를 검토하여 재판소 직원 규모에 관해 잠정적으로 합의하였다.

제 2 절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1. 인 권

가. 제51차 유엔 인권위원회 참가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30일에서 3월 10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1차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위원국(총 53개국) 자격으로 참가하여 팔레스타인 인권문제, 고문 및 구금문제, 인권증진 방안, 군대위안부 문제, 인종차별 문제, 소수민족 인권문제, 아동권리 등 주요 의제토의에 참여하였으며, 주요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1994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아·태 인권워크샵 결과를 보고하고 ‘아·태지역 인권보장에 관한 포괄적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였다.

나. 제47차 유엔 인권 소위원회 참가

1995년 7월 31일부터 8월 25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7차 유엔 인권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에 참가한 우리 대표는 우리 정부의 인권증진 정책을 설명하였다. 특히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Coomaraswamy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조사활동 및 Chavez 인권소위 위원의 군대위안부에 대한 연구업무의 계속을 지지하였고, 인권소위에서 군대위안부 문제가 계속 다루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 아프가니스탄 인권 특별보고관 진출

우리 정부는 신외교 기조하의 인권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유엔의 인권분야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백충현 서울대 법대 학장을 유엔 인권위원회 '아프가니스탄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진출시키려는 외교 노력을 전개하여 1995년 4월 이를 실현시켰다.

'아프가니스탄 인권문제 특별보고관'은 1984년 5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184/37)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후 계속 임기가 연장되어 왔으나 전임 보고관인 Ermacora 교수(오스트리아 국회의원 역임)의 사망에 따라 백충현 교수를 신규로 임명하게 된 것이다.

라. 유엔 인권위원회 재선

우리 나라는 1995년 5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본회의에서 실시된 인권위원회 선거에서 1996년-98년 임기의 인권위원회로 재선되었다. 우리 나라가 1993-95년간 인권위원회 역임 후 연이어 재선된 것은 문민정부 출범후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해 온 인권보호 및 신장 노력을 국제사회가 평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인권위원회 재선을 계기로 유엔 인권분야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계적인 인권신장과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 난 민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기여를 다한다는 입장에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유엔의 인도적 구호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정능력 범위내에서 UNHCR의 난민구호사업에 소요되는 재원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UNHCR에 대한 기여금을 1993년이래 연평균 100% 이상씩 꾸준히 증액하여 1995년도에는 30만달러를 지원하였다.

또한, 냉전후 동북아 지역의 정세변화에 따른 이 지역에서의 난민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UNHCR과 공동으로 난민문제에 관한 세미나 및 워크샵(1995년 1월 및 5월)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UNHCR과의 기술적 협력관계도 긴밀히 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난민증가 추세를 감안할때 유엔 및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인도적 구호활동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으며, 이런 점에서 일반 국민 및 민간기구의 참여와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 1995년의 경우, 관련 민간 단체(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 한국유엔협회)들은 UNHCR을 통해 아프리카 난민지원을 위한 구호기금을 지원하였다.

3. 마 약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능위원회중 하나로서 유엔체제내 마약문제에 관한 최고 정책결정·조정기구인 ‘유엔마약위원회(UN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제38차 연례회의가 1995년 3월 14일에서 23일까

지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마약퇴치에 있어 종래의 불법마약 공급 및 거래부분에 대한 일변도를 지양하고 마약수요 감축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해상경로를 통한 불법마약거래방지 문제를 새로운 의제로서 다루었다. 이외에도 마약류 제조 퇴치와 단속을 위한 국제협력 체제의 정비 및 강화 필요성과 마약 퇴치를 위한 유엔체제내 조정·협력 강화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국제마약통제 노력에 있어 유엔마약통제계획(UNDCP)의 중심적 역할이 확인되었다.

이 회의에 참가한 우리 대표단은 수석대표 기조연설 등을 통하여 UNDCP가 추진하고 있는 수요감축 활동 중시로의 정책전환을 지지하고, 지역차원에서의 불법마약퇴치 협력강화 방안으로 인접국간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 체제가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1989년이래 매년 세계마약퇴치의 날(6월26일)을 기념하는 주요 행사의 하나로서 미국, 일본 등 10여개국의 주한공관 마약담당관 및 본국의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하고 있으며, 마약퇴치를 위한 지역적·국제적 협력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1995년 9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20차 아·태지역 마약법 집행기관장(HONLEA) 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였다.

4. 범 죄

1992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능위원회로 신설된 유엔 체제내 범죄 문제에 관한 최고정책 결정기구인 ‘유엔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UN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는 제4차 연례회의를 1995년 5월 30일에서 6월 9일까지 비엔나 유엔사무소

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제9차 유엔 범죄방지 및 범법자 처우에 관한 회의' 권고안 심의, 우선과제 검토,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 범죄예방 및 형사 사법 분야에서의 유엔규범 및 표준이행, 유엔기구내 협조 및 업무 조정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한편, 우리 나라는 1992~94년 임기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이사국으로 활동해 왔으며, 1994년 5월 뉴욕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1995~97년 임기 이사국으로 재선되어 활동중에 있다.

또한 1995년 4월 28일에서 5월 8일간 카이로에서 개최된 '제9차 유엔 범죄방지 및 범법자 처우에 관한 회의(The Ninth UN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에서는 국제협력의 실질적 강화 방안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지원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5. 사회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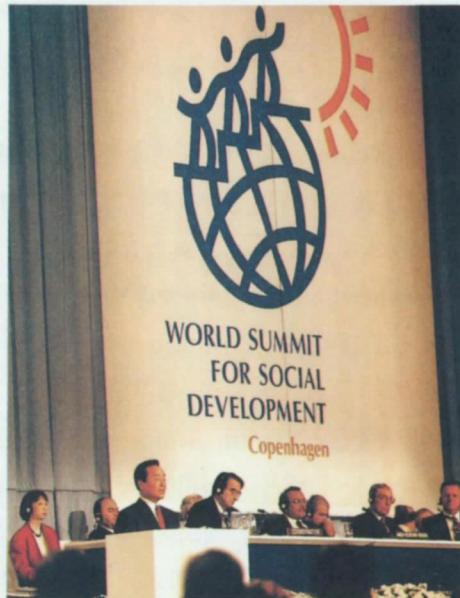
1991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사회분과위원회 의장인 Somavia 유엔주재 칠레대사에 의해 최초로 제의되었던 '사회개발정상회의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가 3차례의 공식 준비회의와 비공식 협의회를 거쳐 1995년 3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유엔 창설 50주년에 맞추어 냉전종식후의 세계 질서에 맞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회개발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룬 최초의 정상간 회의로서, 193개국 대표 2,700여명, 유엔산하 기구 및 국제기구대표 2,100여명, 민간단체 대표 5,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하여 중국의 리펑(李鵬) 총리, 일본의 무라야마(村山) 총리, 프랑스의 Mitterand 대통

령, 독일의 Kohl 총리, 남아공의 Mandela 대통령, 폴란드의 Walesa 대통령, 미국의 Gore 부통령 등 118개국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이 대거 참석하였다.

빈곤퇴치, 고용창출, 사회통합을 3대 핵심주제로 하여 고위급 대표회의(3월 6일-10일)와 정상회의(3월 11일-12일)로 나뉘어 진행된 이 정상회의에서는 사회개발의 원칙과 목표, 이에 따른 10개 공약사항이 명시된 '코펜하겐 선언'과 구체적인 정책과 조치사항들이 제시된 '실천계획'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우리 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영삼 대통령은 정상회의 첫날인 3월 11일 본회의 연설을 통해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달성 경험을 개도국들의 경제·사회발전 모델로 제시하고, 국제협력 강화 방침을 천명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의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 기조연설(95. 3. 11, 코펜하겐)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의 부의장국으로서 이 회의의 효율적 진행에 적극 기여하였으며, 우리 대표단 주도로 사회통합에 있어서 가족의 중심적 역할에 관한 '가족조항'을 미국, EU등 선진국과 77그룹간의 원만한 조정을 통해 정상회의 최종문서에 포함시키는 성과도 거두었다.

사회개발 정상회의 이후 우리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서 유엔과 공동으로 1995년 5월 30일에서 6월 3일간 서울에서 '세계청소년대표자회의 (World Youth Leaders Conference)'를 개최하여, '서울선언'을 채택하는 등 '코펜하겐 선언' 및 '실천계획'의 이행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6. 여 성

1995년 9월 4일에서 15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 회의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는 평등, 발전, 평화를 핵심 주제로 하여 2000년대 여성지위 향상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유엔주관 회의로서, 총 189개국 정부대표 5,700여명, 민간단체 대표 4,000여명, 언론인 3,200여명 등 총 12,900 여명이 참석한 역사상 최대규모의 국제회의였다.

특히 이 회의에는 Finnbogadottir 아이슬란드 대통령, Fujimori 페루 대통령, Brundtland 노르웨이 수상, Bhutto 파키스탄 수상 등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 이외에 우리 나라 대통령 영부인 손명순 여사, Hillary Clinton 미국 대통령 부인, Suzanne Mubarak 이집트 대통령 부인 등 주요 국가의 정상 부인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국제사회는 1985년 나이로비 회의 이후 10년만에 개최된 이 회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제3차 회의 이후 10년만에 개최된 이 회의는 각국 정부 및 민간단체 대표들이 종교권, 문화권별 및 선진국·개도국간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리신장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국제적, 국가별 실천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철폐 및 여성의 완전한 인권향유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진 '북경선언'과 빈곤, 교육, 보건, 인권, 경제활동 등 여성 문제의 12개 관심분야별 전략적 목표와 조치를 기술한 '행동강령'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 정부의 특별빈객이자 우리 대표단 명예수석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손명순 여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제반 노력을 평가하고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가 기울여 온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였으며, 세계문맹퇴치의 날(9월 8일) 기념 특별행사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1990년 설립된 이래 매년 문맹퇴치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되어 온 '세종대왕상'을 1995년도 수상단체인 중국부녀연합회 대표에게 시상하였다.

또한 김장숙 제2정무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 대표단은 '북경선언문' 및 '행동강령' 실무토의에 참가하여 우리 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 함으로써 여성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출에 기여하였다. 특히 우리는 77그룹의 관심사항인 여아(girl-child)의 지위향상을 위해 가족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새로운 전략목표로 추가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모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이어 가정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제 3 절 군축 및 비확산 노력

1. 개 관

냉전종식후 지구 곳곳에서 계속된 국지분쟁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대량파괴무기(핵, 생화학무기) 및 재래식무기의 확산방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도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량파괴무기의 국제군축·비확산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관련 국제회의에 활발히 참여하였으며, 군사무기에 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엔무기거래 등록프로그램의 등록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다.

2. 핵군축·비확산

북한의 핵개발에 의한 안보위협에 직면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국제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 안보이익에 부합된다는 기본 인식하에 1995년 개최된 핵확산방지와 관련된 각종 국제회의에 활발히 참가하였다.

1995년중 핵분야에서의 제일 큰 사건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무기 한 연장 결정이었다. 1995년 4월에서 5월간 뉴욕에서 개최된 'NPT 연장'

및 검토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냉전종식후 국제질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는 핵확산 방지 및 이를 위한 NPT체제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NPT 조약의 무기한 연장을 채택하였다.

우리 정부는 NPT 연장 및 검토회의에 참석하여 핵확산 방지를 위한 NPT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NPT의 '무조건·무기한 연장'을 지지하였다. 또한 NPT 규정에 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면안전조치 협정을 이락 및 북한이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IAEA 안전조치 협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지하였다.

우리 정부는 또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문안 작성을 토의하는 제네바 군축회의에 참석하였다. CTBT는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함으로써 핵확산의 효과적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정대로 1996년 내에 체결될 경우 핵보유 국가와 핵비보유 국가간의 신뢰구축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핵군축의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CTBT의 조기체결을 지지하고 있으며, 1995년중 발생한 프랑스 및 중국의 핵실험 강행이 협약교섭 참여국들간의 신뢰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여 이들 국가들에게 핵실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3. 생화학무기 군축

정부는 대량파괴무기의 하나인 생화학무기의 군축 및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1993년 1월 우리 정부가 서명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의 국내이행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시켜 왔으며, CWC 이행기구인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설립준비위원회 회의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 또한 1995년 6월에는 아·태지역 국가 정부대표들을 서울에 초청하여 CWC 이행에 관련된 문제를 토의하는 '아·태지역

CWC 이행 세미나'를 개최하여 군축분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깊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CWC의 궁극적 목표인 화학무기의 완전한 제거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는 북한 등 화학무기 보유 미서명국의 협약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OPCW 준비위 회의 및 유엔총회 등 각종 회의에서 이들 국가들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세균무기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은 이행절차 및 그 검증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군축·비확산협약으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1994년 9월 개최된 BWC 특별총회에서 협약이행 및 검증강화를 위한 Ad hoc Group회의의 개최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특별총회의 결정에 따라 BWC 당사국들은 1995년 1월부터 제네바에서 협약이행 및 검증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검증절차 등 협약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토의를 시작하였으며, 북한의 세균무기를 우려하고 있는 우리 정부도 여기에 참가하였다.

4. 대인지뢰 등 재래식무기 확산 방지

대인지뢰는 대량파괴무기에 버금가는 비인도적인 무기로서 현재 전세계에 1억개이상 매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대인지뢰의 제거 문제가 그동안 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중단된 지역 및 국가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뢰제거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으로 인해 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었던 국가들은 내전기간중 매설된 지뢰제거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를 지뢰는 전투원뿐만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 특히 어린이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줌으로써 인권,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유엔 결의를 통해 지뢰제거 지원을 위한 유엔

신탁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1995년 7월 제네바에서 지뢰제거지원국제회의(IMMC)를 개최하여 유엔신탁기금의 모금 및 지뢰제거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또한 지뢰의 사용을 규제하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개정회의를 개최하여 지뢰의 사용금지 범위 확대 및 구형지뢰의 사용제한 등을 토의하였다.

우리 정부도 지뢰의 비인도적 성격을 감안하여 199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공로명 외무장관의 기조연설을 통해 지뢰수출을 1년간 중지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유엔신탁기금에 10만달러를 기증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는 1992년 1월 출범한 유엔 재래식무기거래 등록프로그램이 국제무기 이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가간의 신뢰구축과 불법무기 거래 근절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1993년부터 매년 우리의 재래식무기 거래실적을 성실히 보고해 왔다. 특히, 유엔총회 산하 군축문제 심의기구인 유엔군축위원회(UNDC)의 1995년 회의에서 정부는 재래식무기거래 통제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직까지 유엔 재래식무기거래등록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북한 등에 대해 동참을 촉구하였다.

5. 국제 비확산체제 참여

세계적 차원에서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하여 국제협약이라는 일반적 도구와 병행하여 대량파괴무기 제조에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물품, 기술 및 장비를 공급하는 국가들에 의한 수출통제체제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비확산 체제는 회원국간의 투명성 유지를 통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대량파괴무기 확산 의혹내지 우려가 있는 지역 및 국가에 대한 무역거래에 각별히 주의하고 적절한 통제를 실시함으로써 비확산 국제협정의 단점을 보완하여 국제평화 및 안보에 간접적으로 기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 핵문제가 우리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었던 경험을 가졌던 관계로 국제 비핵산체제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국제 비핵산체제 가입을 결정하였고, 1995년 10월에 국내 수출통제체제를 갖추었으며, 1995년 10월에는 처음으로 핵물질확산금지체제인 원자력공급그룹(NSG) 및 쟁거위원회(ZC)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제 4 절 우리의 국제기구 외교 활동

1. 주요 국제기구 활동

우리나라는 1995년 10월 25일부터 11월 16일간 파리에서 개최된 제4차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총회 기간중 실시된 집행이사국 선거에서 임기 4년(1995~99년)의 집행이사국으로 재선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87년 UNESCO 집행이사회에 처음 진출한 이래 연속 3차례에 걸쳐 이사국을 연임하게 되어 UNESCO 무대에서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한편, 다자외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불국사 및 석굴암, 해인사, 종묘 등 우리 문화재 3건을 UNESCO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등 UNESCO를 통한 문화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선발 개도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995년 4월 24일-5월 1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 제51차 총회를 통해 우리는 아·태국가들과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역내국가간 상호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하였으며, '한·ESCAP 협력기금'에 50만달러를 제공하여 역내 국가들의 경제·사회개발을 지원하였다. 또한 만성적인 기아,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의 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5년 5월 2일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와 '한·ECA 협력기금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만달러를 협력기금으로 제공하였다. 한·ECA 협력기금 설립은 아프리카 경제·사회개발에 대한 우리의 지원 의지를 확인한 것이며,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 3월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밝힌 대개도국 원조증진계획을 이행한 것이다.

1995년은 유엔 뿐만 아니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창설 50주년을 맞는 해였다. FAO는 1995년 10월 11일-16일간 기구 탄생지인 캐나다 퀘벡에서 식량안보 각료회의, 심포지움, 세계식량의 날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제28차 총회(로마)에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세계 식량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 준비를 검토하였다. 정부는 대표단을 퀘벡에 파견하고 FAO 창설 50주년 기념우표를 발행하여 식량농업 분야에서의 FAO 활동을 평가하였으며, 각료회의 및 총회에서 각국 농업 및 식량 상황의 특수성을 지적하고 식량농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우리의 식량 자급자족 달성을 노력을 지원하였다.

또한, 1995년 11월 13일-24일간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제19차 총회에서 우리 나라는 3회 연속 이사국에 선출되었다. 이는 세계 제2위 조선국, 제9위 선박보유국인 우리 나라의 국제해운 활동을 회원국들이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1995년 12월 4일-8일간 비엔나에서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제6차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총회에서 미국은 자국의 재정사정과 유엔체제 개편을 이유로 기구 탈퇴를 선언하였으나, 개도국과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UNIDO의 개혁노력과 역할을 평가하고 개도국 공업개발에 대한 UNIDO의 지속적인 활동을 촉구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유엔기구 중 가장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UNIDO의 개혁을 지지하고 UNIDO가 향후 최빈개도국의 공업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UNIDO의 양대 핵심기구인 공업개발이사회(IDB)와 기획예산위원회(PBC)의 이사국으로 재선되어 기구의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주요 국제기구 인사방한

1995년중에는 주요 국제기구 인사들의 방한도 활발하였다. Sadik 유엔 인구기금(UNFPA) 사무총장이 1월에 방한하여 '카이로 국제인구와 개발 회의(ICPC)' 결과이행 및 후속조치를 위한 우리와의 협력방안을 협의한 데 이어, 3월중에는 Essy 제49차 유엔총회 의장이 방한하여 주요 유엔현안 및 한국과 유엔간의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우리와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Blix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4월에 방한하여 한국과 IAEA간의 협력방안을 협의하였으며, 5월에는 군대위안부 문제 협의를 위해 Chavez 유엔인권소위 위원이, 6월에는 Hussain 유엔인권위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방한하였다. 그밖에도 7월중 Coomaraswamy 유엔인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이 방한한 것을 비롯, Diouf 유엔농업식량기구(FAO) 사무총장(8월), Speth 유엔개발계획(UNDP) 총재(8월), Mayor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사무총장(9월) 등이 방한하여 한국과 각 국제기구간의 협력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3. 주요 국제기구에의 한국인 진출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 활동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익도 신장될 수 있으려면 가능한 많은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사무국 진출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우리의 대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수준에 상응하는 한국인의 진출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1995년 12월 현재 유엔산하기구 및 전문기구 등 각종 국제기구에 총 198명의 한국인이 근무중에 있다.

특히 1995년중에는 국제기구내 고위직 진출이 두드러졌다. 백충현 서울대 교수가 1995년 4월 유엔인권위 아프가니스탄 인권문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것을 비롯하여 박을룡 유엔개발계획 고위자문관 임명(95. 5), 김여수 서울대 교수의 UNESCO 사회과학국장 임명 등이 있었다. 1995년 7월에는 민병석 전체코 대사가 유엔내 사무차장보급인 유엔크로아티아평화유지단(UNCRO) 단장으로 그 임무를 개시하였으며 김철수 전 상공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으로 선임되었다.

또한 1995년 2월에는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사무국 진출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제기구 인사센터’를 외무부 국제연합국내에 설치하였다. ‘국제기구 인사센터’는 국제기구 인사정보의 체계적 수립, 관리 및 공급체제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PC통신 및 ‘국제기구 직원모집 정보’ 발간 등을 통해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유엔사무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제기구들은 현재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직원 감축 추세에 있다. 따라서 현재 각 국제기구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채용을 중단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국제기구에 신규채용되어 진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우리 나라가 각종 국제기구에 비교적 늦게 가입하였던 이유로 그간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이 활발치 못했음을 고려, 이의 시정을 위해 유엔사무국과 구체적인 우리 국민의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는 등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중에 있다.

4.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선언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와 유

웬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해 안전조치 협정의 조속한 이행을 계속 촉구하였으며, 북한은 영변소재 5MW급 실험용 원자로의 ‘사용후 연료봉’ 인출을 둘러싸고 IAEA와 대립끝에 1994년 6월 IAEA를 탈퇴하였다. 이후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에서 핵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틀에 합의하였다.

1994년 10월 미국·북한간 제네바 합의에 따라 IAEA는 북한 핵시설 동결감시를 이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IAEA 사무국은 1994년 11월이후 네차례에 걸쳐 북한과 핵시설 동결 감시에 관한 일련의 기술적 협의를 가졌다.

우리는 제네바 미·북 합의이후 그동안 북한이 미·북한 양자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핵 안전조치 협정을 조속히 전면 이행하도록 미국, 일본 등 우방국은 물론 유엔 및 IAEA 등 관련 국제기구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미·북한 합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 및 대체에너지 제공 등을 주관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미국, 일본과의 협의를 거쳐 1995년 3월 출범시켰다.

KEDO는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과 관련한 재원조달과 공급, 대북 대체 에너지 공급 등 미·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콘소시움이다. 이러한 KEDO는 집행이사회, 총회, 사무국, 자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KEDO의 최고 의사결정권은 원회원국인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으로 구성되는 집행이사회에 있다. 그러나 한·미·일 이외의 국가도 일반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1995년말까지 원회원국인 한·미·일 3국을 비롯하여 핀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총 7개국이 가입하였다.

한편,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북한은 한국형 경수로 및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거부하려는 입장을 계속 굽히지 않았으나,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진 1995년 6월의 미·북한간 쿠알라룸푸르 합의를 통해

북한은 한국형 경수로와 그 건설과정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수용하게 되었다. 또한 미·북 쿠알라룸푸르 합의이후 KEDO와 북한은 뉴욕에서의 3개월에 걸친 협상을 통해 마침내 1995년 12월 대북 경수로사업의 기본원칙을 정한 경수로공급협정을 체결하였다.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KEDO는 제네바 합의 이후 1년 2개 월만에 대북 경수로공급 협상을 마무리 하고 미·북 합의 이행의 중요한 1단계 작업을 성공리에 끝냄으로써 KEDO와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과의 상업계약 체결 및 경수로 설계 등 본격적인 건설작업의 착수 계기를 마련하였다.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은 ‘한국표준형 원전’을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통해 북한에 건설한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고, 아울러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반 이행조치들을 국제법적 차원에서 재확인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미·북 합의가 정치적·외교적 약속이라면, 경수로 공급협정은 구속력있는 국제법적 조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편, 경수로사업의 첫 가시적인 추진으로 한국, 미국, 일본 3국 전문가 및 KEDO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된 경수로건설 부지조사단이 지난 1995년 8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부지조사 임무를 수행하였다.

미·북 합의이후 북한 핵문제는 미·북 양자 합의의 차원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해결노력 또한 중시하고 있다. 미·북 합의 이후 우리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북 합의의 원활한 이행을 우선으로 하되, 이와 병행하여 다자의 틀에서 안전조치 협정 의무의 조속한 전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IAEA 및 유엔 등 다자차원에서의 북한 핵문제 토의시 미·북 합의에 따른 IAEA·북한간 핵동결감시 이행

과 아울러 IAEA · 북한간 미해결사안의 조속한 타결을 지속적으로 요구 할 것이다.

제 5 절 국제법질서 형성에의 참여

1. 조약체결

건국이후 1995년 12월말까지 우리 나라가 체결한 조약체결 건수는 양자 조약 1,243건, 다자조약 341건이다.

가. 양자조약

1995년 한해동안 체결된 양자조약은 총 69건(발효기준)으로,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치·안보관계(4건), 경제·통상관계(56건), 사증관계(5건), 문화관계(5건) 등이다. 양자조약 체결건수는 구사회주의권 국가와의 관계 긴밀화 등 우리의 대외관계 다변화와 우리 경제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라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의 캐나다(95. 10) 방문과 Karimo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95. 2), Do Muoi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95. 4), 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95. 5), Mandela 남아공 대통령(95. 7), Horn 헝가리 총리(95. 12) 등 정상급 외빈방한을 계기로 다음 표와 같은 협정 및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실질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정상외교의 성과를 한층 더 높였다.

<1995년도 정상외교시 서명된 협정 및 양해각서>

구 분	협정 및 양해각서
김영삼 대통령 캐나다 방문	산업기술협력 양해각서, 농업협력 양해각서, 사회보장협정체결 의향서, 취업관광프로그램 양해각서, 국립공원 교류협력 양해각서
Karimo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	교육협력 양해각서, 관광협력 양해각서 농업기술협력 양해각서, 전기통신 및 방송협력 양해각서, 외무부간 과학기술 협력계획
Do Muoi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방한	과학기술협정, 해운협정, EDCF 차관협정
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	문화협정, 과학기술협정
Mandela 남아공 대통령 방한	이중과세방지협약, 투자보장협정, 항공협정
Horn 헝가리 총리 방한	EDCF차관협정

경제·통상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 및 기업의 해외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리 나라와의 실질협력관계 증대 가능성이 높은 국가와의 투자보장협정(타지키스탄, 그리스, 자이르, 페란드, 필리핀, 아르헨티나, 남아공, 포르투갈, 스웨덴, 브라질), 이중과세방지협약(남아공, 그리스), 경제과학기술협정(잠비아, 카자흐스탄, 체코, 베트남, 방글라데시, 알바니아), 항공협정(그리스, 독일) 등을 체결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와의 인적 왕래 및 물적 교류가 활발한 국가와의 형사사법공조조약(프랑스) 및 범죄인인도조약(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체결을 통해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국제범죄의 예방 및 진압을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고 형사사법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도모하였다.



한·베트남 정상회담후 개최된 협정서명식 (95. 4. 13, 청와대)

나. 다자조약

1995년중에 가입한 다자조약은 총9건(발효기준)이며, 경제·통상관계(1건), 환경관계(2건), 인권관계(2건), 자원·기술관계(2건), 해사관계(2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서의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에 관한 협약(ILO

제142호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대한 개정 의정서(코펜하겐 개정 의정서)'는 1994년에 비준을 마쳐 1995년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조약이다.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은 모든 고문행위를 범죄화하고 고문과 관련된 범죄인은 당사국 사이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인도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행위가 있는 당사국에 대하여 비공개로 조사·심리할 수 있으며 당사국에게 조사협조와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인권존중 국가로서의 대외적 이미지를 고양하고 국내적으로는 인권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는 '1979년 해상 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약' 가입 및 '국제 코스파스-살새트 계획과의 지상부분 제공국으로서의 제휴협정' 체결을 통한 신속한 구조 체제 확립으로 해난구조 활동의 효과를 높였다. '국제 코스파스-살새트 계획'이란 인공위성을 통한 조난정보 송·수신을 위하여 1988년 미국, 러시아, 프랑스, 캐나다 4개국간 체결된 협정으로, 협정 비체약국의 경우 제휴협정 체결을 통하여 위성에 의해 중계된 조난신호를 수신, 처리하는 설비 및 업무관리 센터를 운영하는 지상부분 제공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원·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해역의 생물자원, 해양자원, 기후변동 및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연구활동의 촉진과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북태평양 해양과학기구'에 가입하였으며, 북한 경수로 사업의 재원조달과 공급, 경수로 완공시까지 대체에너지의 공급을 위해 한·미·일 3개국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에 관한 협정'을 1995년 3월 9일 체결하였다. 한편 중부 베링해 명태자원의 보존·관리 및 적정 이용을 위한 국제체제를 수립하여 최대지속 생산

수준까지 명태자원을 회복·유지시키기 위한 ‘중부 베링해 명태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을 1995년 12월 5일 비준하였다.

정부는 또한 1994년 제21차 만국우편연합(UPU) 총회에서 채택 또는 개정된 ‘만국우편연합 헌장 제5추가의정서’, ‘만국우편연합총칙’, ‘만국 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소포우편물 약정 및 최종의정서’, ‘우편환약 정’, ‘우편대체약정’, ‘대금교환약정’ 등 7개 조약을 1995년 12월 4일 비준(제5추가의정서) 또는 승인(나머지 6개조약) 함으로써 향상된 수준의 국제우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그밖에 ‘원자력 안전협약’, ‘1994년 국제열대목재협정’, ‘상업적 선박 건조 및 수리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을 1995년중 비준하였으나 아직 미발효 상태다. 또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5개국은 1995년 12월 6일 ‘두만강 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시아에 적용되는 환경원칙에 관한 양해각서’ 및 ‘두만강 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협의위원회 설립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이 협정은 국내절차를 완료한 서명 당사국중 마지막으로 국내 절차를 완료한 당사국이 그 사실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고한 날에 발효 되어 있다.

2. 해양 및 남극 업무

가. 해양법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1994년 11월 16일 발효(93. 11. 16까지 비준한 60개국에 대하여) 되었으며, 협약 채택후 변화된 국제정치·경제 상황과 선진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협약상의 심해저 개발제도를 수정한 ‘심해저이행협정’이

1994년 11월 16일부터 잠정 적용되고 있다. 해양법 협약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심해저 이행협정은 심해저와 그 자원이 '인류공동유산 (common heritage of mankind)'이라는 기본원칙을 수용하면서도 시장경제원칙을 대폭 반영하여 심해저 광업에 투자해 온 투자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1983년부터 심해저 광업에 참여해 온 우리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1994년 8월 선행투자가 자격을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태평양상 Clarion-Clipperton 해역 15만㎢를 우리의 광구로 등록함으로써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 나라는 1995년 12월 뉴욕에서 열린 국제해저기구 총회에 참여하여 국제해저기구 이사회에 이사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였다.

1995년 12월 현재 독일, 호주 등 선진국을 포함한 87개국이 해양법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 선진국도 1996년 상반기를 목표로 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 3월 14일 해양법협약에 서명한 이후 협약 비준을 위한 법정부적 준비작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1995년 12월 1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게 되었다.

또한 1993년 초부터 한반도 주변의 해양제도와 해양관련 국내법령 정비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1995년 12월에는 1977년의 영해법을 개정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영해법 개정은 우리 주변해역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밀수, 불법입국 및 외국어선에 의한 불법조업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개정으로 해양법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접속수역 (contiguous zone)'을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영해는 제외)에 설정하여 이 수역내에서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보건위생에 관한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해양관할권 행사범위를 확대하였다.

나. 남극활동

1959년 12월 1일 워싱턴에서 채택되고 1961년 6월 23일 발효된 '남극조약' (1995년 현재 42개 당사국) 을 모조약으로 한 남극조약체제는 '남극물개보존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등 국제협약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MLR) 및 남극연구과학위원회 (SCA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나라는 1978년 이래 남빙양 크릴 조사단 파견 등 과학탐사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1985년 4월 28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1986년 11월 28일 '남극조약'에 각각 가입하고, 1992년 7월 2일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에도 서명하였다. 특히 1988년 2월 킹조지섬 (남위 62°, 서경 58°)에 상주기지인 세종기지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협의당사국 지위 취득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1989년 10월 18일 남극조약 당사국중 23번째로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ATCP) 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우리 나라는 남극조약의 전반적인 운영체제에 정식으로 참가하게 되었고 1995년 5월에는 제19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 ATCM) 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남극 진출 후발주자인 우리 나라는 서울 회의를 원만하게 개최함으로써 남극체제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회의에서 우리 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남극탐사·연구활동 확대에 필요한 주요 협의당사국과의 협의체제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남극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의 국력에 걸맞게 지구환경문제와 지구의 미래에 대한 우리 나라의 관심과 역할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1995년 10월에는 제14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MLR) 회의에 참가하여 남극수역에서의 우리의 과학연구 및 조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

였다.

3. 국제법률기구

1991년 9월 유엔 가입이후 정부는 국제법률기구에의 참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성문화의 증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유엔 총회 제6위원회, 국제법위원회(ILC) 등 각종 국제법률기구 및 회의에 적극 참가하여 우리 나라 인사의 국제법위원회(ILC), 국제사법재판소(ICJ) 진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 발효로 1996년 8월에 신설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 박춘호 교수를 입후보시켜 피선을 위한 외교활동을 적극 전개중이다.

한편, 세계국제법협회(ILA) 등 비정부간 국제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성문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34차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Asian-African Legal Consultative Committee : AALCC) 총회,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 COPUOS) 법률소위원회,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 법률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였으며, 원자력 손해배상에 관한 비엔나협약 개정 및 보충기금협약 제정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원자력 손해배상상설위원회 제11-13차 회의에도 계속적으로 참여하였다.

국제사법 분야에서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 본회의를 비롯해 3개 실무반 회의에 참가하여 전자자료교환(EDI), 지불불능법(Insolvency Law), 미수채권양도(Receivables Financing) 등 점차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국제무역법의 제정과정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그외에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UNIDROIT협약 채택회의 등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 UNIDROIT) 관련 회의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